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9.

발의자 : 김기표 · 민홍철 · 권칠승

이학영 · 김동아 · 한준호

강득구 · 위성곤 · 강준현

이용우 · 신영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‘확정’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.

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해당초 열람 · 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·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의 제목 중 “확정 판결서등의”를 “판결서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정보(이하)”를 “정보(판결이 확정 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판결서, 이하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